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4. 23.(화)
제 416회 임시회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재정지원 부정수급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사유 발생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 사유 보완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도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 부정수급, 사업목적에 위배 되는 결격사유 발생,

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
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함

나. 주요내용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취소요건 추가신설(안 제15조제1항)

4.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
5.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
6.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

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및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참고 자료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
- 예비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바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, 타 시도 규정¹⁾과 비교하여 판단해 볼 때, 추가로 신설된 지정 취소 요건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

1)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,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

관련법령 발췌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18조(인증의 취소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4.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지침 발췌

□ 지정요건

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2.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3.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
4.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5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, 교육 이수

□ 지정취소

-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, 규칙 등을 통해 지정취소 기준 및 방법을 정하되,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함
 -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 -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
 -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,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
 - 폐업,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